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메타버스과학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2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메타버스과학국장 이정우

나. 제안이유

○ 新산업 분야의 급변하는 추세에 적시 대응하고,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 과 ‘문화예술’ 을 결합한 행사이자 AI·메타버스 관련 주제 또는 기술 활용의 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가 연내 개최될 예정임.

○ ‘메타버스 수도 경북’ 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경상

북도 AI·메타버스 영화제'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저명한 국제 영화제와 교류·협력을 통해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영화제로 발전이 필요함.

- 이에, 전통과 품격있는 뉴포트비치 영화제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북 AI·메타버스 영화제의 글로벌 위상 격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하여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대상 사업 :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 세부내용

구분	사업명	수탁·대행 공공기관명	위탁기간	예산액(24년도)	비고
동의안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재)경북테크노파크	2024.6.1.~ 2024.11.30. (6개월)	500,000천원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1)에 의거 도지사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2)에

1) 제7조(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대상사업 검토

-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근거에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6월 개최 예정인 제1회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의 글로벌 위상과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저명한 국제 영화제와 교류 협력을 위해 미국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우수작품을 참가하고 현지 홍보관을 운영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임.
- 특별상영전 운영, 현지 홍보관 설치 등 영화제 참가 및 영화제 상영전 인서트, 웹사이트·SNS광고 등 해외 홍보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재)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4.6.1.~2024.11.30.까지 6개월간이고,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5억원(도비)임.
- 경북테크노파크는 메타버스융합진흥본부 설립 등 전문적 역량을 지닌 인재채용으로 메타버스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적 지원 등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2)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뉴포트비치 영화제 개요

- ❖ 명 칭 : '24년 뉴포트비치 영화제(NBFF : Newport Beach Film Festival)
- ❖ 기 간 : 2024.10.17. ~ 10.24.
- ❖ 장 소 :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시 일원
- ❖ 참석인원 : 58,000명/年
- ❖ 주최/주관 : 뉴포트비치 영화제 조직위원회
- ❖ 주요내용 : 리셉션, 토크쇼, 상영회, 시상식 등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 ‘뉴포트비치 영화제 참가 및 해외홍보 지원’ 사업에 대해 (재)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적정성,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위탁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시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위탁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예산안 검토와 함께 수행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 위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 종료 이후 성과평가를 통한 결과 반영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